

만수3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2020. 12. 14. 제정
2022. 2. 14. 전부개정
2023. 1. 9. 일부개정
2024. 4. 1. 일부개정
2024. 10. 7. 일부개정
2025.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 및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따라 만수3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만수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만수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만수3동의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수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각 공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조례 제2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관내”라 함은 행정구역상 만수3동 관할 구역을 말한다.
5. “다른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만수3동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카드”라 함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는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만수3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②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만수3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만수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5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7. 시설 및 프로그램 공공성 원칙
 8. 수혜 형평성의 원칙
- ② 수탁업무와 주민자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은 주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6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신청·선정·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25.12.8. 개정>

1. <2025.12.8. 삭제>

2. <2025.12.8. 삭제>

② 위원의 선정·위촉은 조례 제7조의 2,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2025.12.8. 개정>

③ <2025.12.8. 삭제>

④ 조례 제7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5.12.8. 신설>

제8조(추천 운영위원회) ① <2025.12.8. 삭제>

② <2025.12.8. 삭제>

③ <2025.12.8. 삭제>

제9조(위원 해촉 요구)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의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또는 연 5회 이상 불참자

2. 자치회장을 제외한 위원이 1개 이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회비를 3개월간 미납한 자

4. 주민과의 심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현저한 민원을 야기시킨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원등 구성)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자치회장 1명, 자치부회장 2명, 간사 1명, 감사 2명과 5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 등 임원의 결원 시에는 차기 정기회의 시 선출하되,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임 주민자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공로가 인정된 위원에 대해 자치회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고문의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임기는 주민자치회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의 개최)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차기 정기회가 공휴일 등 개최가 어려울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정기회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정기회는 조례 제6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분과위원 포함) 해촉 요구
5. 분과위원회 구성
-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주민자치회 정기회에 앞서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등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2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회장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자가 분과위원의 활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은 자치회장이 한다.
- 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는 주민자치회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총무를 두며,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인원은 전체 위원 수를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정하되 위원은 하나 이상의 분과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⑦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의 임기는 해당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회의개최) ① 분과위원회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총무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회의 및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소속 위원들과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과회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논의된 사항 중 자치센터 기금사용 및 주민자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 ③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총회 개최)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 청구가 있을 때

③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18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총회 개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당해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②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③ 주민자치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19조(회비)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종류와 금액, 납부방법은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표창) ① 만수3동 주민이나 위원 중에서 동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등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 임기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 위원에 한한다.

제3장 자치센터 운영

제21조(운영 등) 자치센터는 공휴일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의 사용·이용) ① 조례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동장에게 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동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주민자치회 심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단체는 자치센터 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운영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할 경우, 개설시기·운영시간·수강인원·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강인원을 선정할 경우, 온라인 신청 인원은 모집인원의 30%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③ 수강인원이 운영횟수별 주2회/15명, 주3회/25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프로그램 특성상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및 방법·인원수 등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수강자는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접수순에 의하여 선정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자 선정은 수강료를 결제한 자로 한한다.

- ③ 프로그램 수강신청 후 환불 시 다음 분기 선착순 모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교구교재비 및 재료비 등)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교구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수강생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수강생 준수사항) ① 수강생 본인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 분실은 자치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 ② 수강생 및 동반가족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은 본인이 책임진다.

- ③ 운동 프로그램 수강생은 수강 전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강사와 상의한 후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 ④ 수강생은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 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 ②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③ 조례 제33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회계책임자는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업무 담당자로 하며, 수강료의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회 간사로 하되, 필요시 자원봉사자가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환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 본인(수

강생의 보호자 포함)의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주민참여) ① 동장 및 자치회장은 주민·단체의 자치센터 이용편익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장 및 자치회장은 인터넷 매체, 언론, 유인물 및 각종 교육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시설사용과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강사의 선정 및 계약)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자

②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및 강사 결원 시 제1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계약기간은 당해 분기 개설된 프로그램별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채용된 강사는 강의실적 및 경력 등을 참고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행정복지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할 때에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 수당은 1회당 1시간을 기준으로 35,000원으로 한다. 단, 1회당 1시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지급액의 범위는

자치회의 심의로 정한다.

- ③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강사의 임무) ①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에서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수강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 보다는 봉사 우선 정신으로 강의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위촉된 강사는 센터자랑 경연대회, 전시회 등 자치센터의 대내외 행사에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④ 강사는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기금 관리 및 기타사항 등

제32조(회계의 처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등(이하 “운영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기금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2. 운영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경리관 및 지출원 각 1명, 감사 2명을 회계위원으로 선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3. 경리관(운영경비 책임관)은 자치회장이 겸임한다.
4. 지출원(운영경비 실무담당자)은 주민자치회 간사가 겸임하거나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주민자치회 감사가 겸임한다.
6.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등에 따른 회계위원 유고 시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7. 정상적경비(강사수당 및 공과금 등)와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선 지출 후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8. 5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 및 감사) ① 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정기회의 시 전월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자치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감사
2.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
3.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회계 처리에 관한 감사
4. 주민자치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 참석 여부 감사

④ 감사 자료인 모든 행정 문서 및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제35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이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직인 날인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문서 접수·등록 대장
3. 각종 회계장부
4. 사업계획서
5.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8조(운영세칙의 준용)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례,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9조(개정) 이 운영세칙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2020. 12. 14.)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운영세칙의 폐지) 이 운영세칙 시행과 동시에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22. 2. 14.)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1.)

이 운영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비는 2024년 4월 강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0. 7.)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8.)

이 운영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25.12.8. 개정>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대장

(제7조제1항 관련)

연번	접수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1							
2							
3							
4							
...							
...							
30							

(접수번호 :)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위원 활동경험	유 ☐ 무 ☐
E-mail		직업 (직위)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 만수3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장·사업장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접수자	(인)

(뒷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동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심사, 위원 선정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email 주민자치위원 활동 경험,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주민자치회 위원 관리,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주민자치 위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통계수집, 사업정보제공	성명, 성별, 생 년월일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일반주민	위원 위촉 공고	성명, 성별	공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만수3동장 귀하

서 약 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본인은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피선거권자 등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으며, 제17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남동구 만수3동장 귀하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위촉기간	년 월 일 ~ 위원 선정 완료 시		
주요역할	○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상기 본인은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며,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 만수3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아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남동구가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위촉기간 및 위촉기간 종료 후 2년간
 - 보유관리 : 위원선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년간 보유 후 폐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 위촉이 불가합니다.

동의

미동의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 (서명)

- 19 -

(뒷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동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자격 심사, 위원 선정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email, 주요활동 경력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관리,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주민자치 위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통계수집, 사업정보제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회장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분과 회의결과 보고서

(제16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분과명			
회의일시		장소	
참여위원			
안건			
회의결과 (결정사항)	1. 2.		
토의내용	1. 2. 3. 4.		
기타사항			

년 월 일

만수3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강의 용역 계약서

(제29조제2항 관련)

만수3동장(이하 “갑” 이라고 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_____ 강사(이하 “을” 이라 한다) _____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24. . . ~ 2024. . . 까지(3개월)
2. 근무장소 : 만수3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및 경로당 등
3. 업무성격 : _____ 프로그램 강사
4. 강의시간 및 횟수 : 주 회/ 회당 시간(단, 공휴일 제외)
5. 강 사 료
 - 지 급 액 : 당월 지급액 (35,000원/시간 × 시간)
 - 지 급 일 : 매월 5일 (공휴일의 경우 익일)
 - 지급방법 : “강사” 의 예금계좌에 입금(소득세 등 3.3% 공제)
6. 계약조건
 -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1시간당 35,000원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과정의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다.(단, 추가지급액의 범위는 만수3동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을” 은 지급 기준의 강사수당 이외의 기타 비용(제수당 등) “갑” 에게 청구 할 수 없다.
 - ※ 강사가 수강생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물론, 수강생이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받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민원 발생시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강생에게 언어폭력, 성적수치심유발, 기타 수강생들의 강사거부의사 표출시 사실 확인 후 계약취소하며, 부당한 조건요구나 강요도 하지 않아야한다.
 -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기 타
 - 수강인원이 운영횟수별 주2회/15명, 주3회/25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 할 수 있다.
 - “을” 은 당해 분기 3개를 초과하는 프로그램 과정에 지원 및 강의활동을 할 수 없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남동구 만수3동장

(직인)

(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감사결과 보고서

남동구 만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감사결과

건 명	00년 주민자치회 상반기 운영 정기 감사		
분 야	운영, 회계	기 간	0000.0월~0월
범 위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 2.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회계 처리에 관한 감사 3.주민자치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 참석 여부 감사 등		
지적사항	1.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 결과 : 이상없음 2.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회계 처리에 관한 감사 결과 : 이상없음 3.주민자치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 참석 여부 감사 결과 : 이상없음		
권고사항	-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감 사 : (인)

감 사 : (인)

만수3동 주민자치회 직인 관리 대장

(제36조제2항 관련)

직 인 명					
종 류		☐ 직 인		관리자	
☐ 등 록 · ☐ 재 등 록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비 고			
폐 기 직 인	(인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자 (분실자)	성 명 :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만수3동 주민자치회 직인 날인 대장

(제36조제3항 관련)

연번	문서번호	문서명	날인일	발송일	비 고 (통제)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

(제27조제1항 관련)

1.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용 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 미사용시	냉·난방 사용시	
다목적홀, 회의실, 대강당 등 (부대시설 포함)	강연, 토론, 발표회 등 전용 사용 시	1시간	15,000원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30분당 50% 추가 산정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기준	수강료			비 고
		주 1시간 이내	주 2시간 이내	주 2시간 초과	
프로그램 수강료	3개월	36,000원	54,000원	72,000원	재료비 별 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기준과 비율

(제27조제2항 관련)

1.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비율	감면대상
전액 감면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 2.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비율	감면대상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을 함께 수강하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감면 가능

※ 감면프로그램 가능 개수는 1인 2개 강좌로 한다.